

연해주 한인사회를 통해 본 러시아정부의 다문화정책



김인성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feuille06@korea.ac.kr)



1. 서론

러시아연방에서 민족문제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구소련의 몰락이 소비에트 민족공화국들의 민족주의의 분출과 함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연방이 독립한 이후에도 체첸공화국의 독립의 요구와 두 차례의 전쟁 그리고 타타르스탄 공화국이나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등을 위시한 지방정부들의 주권 및 더 많은 자치권의 요구 등으로 인해 또 한 번 국가가 해체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구소련 말기에는 고르바초프와 엘친 간의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저마다가 민족공화국 및 지방정부들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방정부 지도자들로부터의 지지 획득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이 독립한 이후 엘친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러시아연방 내 민족관계의 기본적인 구상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92년 체결된 연방조약과 1993년 채택된 러시아연방헌법이 민족공화국들과 여타의 지

방정부들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민족문제 해결이 기본적인 원칙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1993년 헌법에서 채택된 모든 지방정부들의 동등성의 원칙이다.

한편, 헌법에서는 러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평등함을 천명함으로써 민족간 관계에 있어서도 동등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민족 간 동등성의 인정, 즉 차별의 배제는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연방정부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라는 논의가 민족정체성의 모색과 관련된 논쟁과 중첩되면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러시아연방의 민족문화 관련 정책을 다문화정책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연해주 한인 사회를 사례로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는, 제도적 차원에서 러시아연방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연방정부가 추구하는 다문화주의의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는, 연해주 한인사회가 자민족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정부와 연해주지방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연방정부의 제도적 수준에서의 다문화정책의 내용과 현실적 차원에서의 다문화정책의 의미와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다문화 정책의 제도적 기반

1) 헌법상의 보장

러시아연방은 민족주의의 분출에 의하여 구소련이 몰락하면서 독립한 바 있다. 때문에 태생적으로 민족 간 갈등의 해결은 국가적 일체성의 확보라는 과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하였다. 게다가 러시아에는 약 130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생러시아연방정부는 민족 간 관계의 정립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민족 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의 중요성은 1993년 12월에 채택된 러시아연방헌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상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연방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서문이다. 러시아연방헌법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영토에서 공동의 운명으로 결합된 러시아연방의 다민족 국민인 우리는 인권과 자유, 국민의 평화와 동의를 확인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하며, 민족 간 평등 및 민족자결이라는 보편적 원칙에서 출발하여, 사랑과 조국에 대한 존경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준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중략〉 헌법을 채택한다”.

러시아어판 헌법 서문의 첫 문장은 “우리, 다민족 국민”으로 시작한다. 즉, 다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헌법의 맨 앞에 명시함으로써 민족 문제의 해결이 국가 건설의 제일의 과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민족평등과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민족 간 관계를 평화와 동의에 의해 건설함으로써 국가적 일체성을 보존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3조 1항에서 러시아연방의 주권과 유일한 권력의 원천은 연방의 다민족 국민이라고 밝힘으로써 국가권력과 주권의 원천이 특정 민족이 아니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과 결부되어 있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19조 2항에서는 “성별, 인종, 민족, 언어, 태생, 부와 사회적 지위, 거주지, 종교, 신념, 사회단체소속, 그리고 다른 여하튼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부는 국민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정 민족에의 소속이 가져다주는 특권이나 차별이 없으며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민족적인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민족간 반목행위나 민족적 언어적 우월성에 대한 선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29조의 2항에 따르면 “사회적이고 인종적이며 민족이거나 종교적인 증오와 적대감을 야기하는 선전과 선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적 혹은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인 우월성에 대한 선전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언어에 관해서는 헌법 6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조 1항은 러시아어가 러시아연방 국가 공식어임을 밝히고 있고, 2항에서는 민족공화국들이 공식어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공화국 공식어를 공화국 내에서 러시아연방 공식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민족공화국 이외의 여타 민족 언어와 관련해서는 3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러시아연방은 연방의 모든 민족들의 자민족언어의 보존과 교육 및 발전을 위한 조건을 구축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연방 헌법에 드러나는 다문화 관련 보장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기술되어 있다. 크게는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주권의 다민족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 따라 주권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주권의 원천을 다민족 국민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다민족’의 정체성이 러시아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민족의 존재가 러시아연방의 운명과 국가의 일체성의 보존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는 평등의 원칙이다. 이는 서문에서도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헌법의 여러 군데에서 민족은 평등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족 구성이 매우 복잡한 탓에 평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 연방의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총인구는 145,166,731명이며 러시아민족은 115,889,107명으로 약 80%를 점하고 있

다. 한편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은 타타르로서 5,554,601명으로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한인들은 148,556명으로 전체 인구 중 33번째로 많은 민족이지만 0.1%로 매우 미미하다. 인구조사 결과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민족들은 총 142개인데, 이들 중 10만 이상으로 구성된 민족은 도합 39개이며, 1만 명 이하의 민족의 수는 67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구성으로 인해 보편적인 차원에서 민족간 평등, 증오나 적대감을 야기하는 선전 선동 금지, 언어적인 우월성에 대한 선전 금지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평등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게다가 민족간 자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등을 포함한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라는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다른 법률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셋째는 민족 자결의 원칙이다. 민족 자결은 서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자민족언어의 보존과 교육 및 발전을 위한 조건을 구축한다는 규정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민족자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살펴볼 여러 법안들 특히 민족문화자치단체법에 의해 보장되고는 있으나, 언어와 문화를 제외한 영역과 관련된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이다.

2) 이주와 정착 관련 제도

일반적으로 이주와 관련하여 다문화정책의 대상은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민 등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현재 중국인들을 위시한 노동이주와 불법이민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로의 이주는 대부분이 구소련 국가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경우 구소련 시기에 이미 러시아화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어에 능통하며, 또한 러시아 문화에도 적응능력이 매우 높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언어장벽의 문제나 문화적응의 애로사항을 러시아로의 이주민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들다.

러시아로의 이주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는 구소련 시기 특히 스탈린 시기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일본이나 독일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탄압받고 원거주지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됐던 민족들의 복권과 재이주 지원에 있다. 특히 타타르, 체첸, 잉구쉬 등 많은 민족들이 강제 이주되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다가 1937년 이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20만에 달하는 한인들과 그 후손들의 재이주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안이 1993년 4월1일에 통과되었다. 이는 “러시아 한인들의 복권에 관한 최고소비에트령 (О реабили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тановление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РФ N4721-1)”이다.

이 법안은 불법적으로 탄압받았던 러시아 한인들 문제에 있어 역사적 공정성(справид

ливостъ, justice)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강제이주 한인들 문제의 해결책으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명예회복이다. 이 법안 1조는 1937년부터 채택되기 시작하여 정치적 탄압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했던 러시아 한인들 관련 조례들이 불법임을 인정하였다. 둘째, 원거주지로의 재이주 보장이다. 강제 이주된 한인들에게는 러시아연방의 원거주지로의 귀환이 개인적 차원에서 보장된다. 셋째, 국적취득이다. 동법 3조에 따르면, 강제 이주의 결과로 구소련의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그 직계 가족들로서 러시아에 영구거주를 목적으로 이주한 자들은 청원 혹은 러시아연방 시민법이 규정하는 여타의 방법에 의해 러시아연방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생계지원이다. 연방정부의 지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이주 러시아 한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착촌을 마련하여야 한다.

러시아 한인들의 복권에 관한 법안은 일본의 간첩혐의를 쓰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던 한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과거의 거주지로의 재이주와 국적회복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안이 구체적인 재이주 절차나 국적회복 절차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첫째, 재이주는 자발적으로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중앙아시아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이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청원에 의해 러시아연방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러시아연방 시민법에는 강제 이주된 민족들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인들은 다른 여타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과정을 통하여 국적을 취득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현재 약 3만~4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셋째, 재이주 한인들에 대한 정착촌의 제공은 그 절차에 관한 법적은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러시아 한인들의 복권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의 요청에 의해 1998년 1월 19일 ‘연해주 지사령 N64P’에 따라 연해주 재이주 한인들에 대한 정착촌의 제공이 현실화되었다. 이 같은 조치는 비록 러시아 중앙정부가 한인들의 복권에 관한 법안에 따라 취한 것이었지만 노동자를 유치하고 정착촌을 지원하려는 연해주 정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다.¹⁾ 그러나 정착촌의 생활기반 시설 부족과 소유권 이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3) 언어법

“러시아연방민족의 언어에 관한 법(Закон о языках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은 1991년 10월 25일 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에서 채택되었으며, 신생 러시아연방에 계승되어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법안의 서문

1) 전신욱,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재이주 요인과 정착현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3, 97쪽.

은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된다: “러시아연방의 민족 언어들은 러시아라는 국가의 국민적 성취이다. 러시아연방의 민족 언어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 놓여있다. 정부는 러시아연방 영토 전역에서 민족 언어들과 이중 언어, 다중 언어의 발전을 촉진한다.” 민족 언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연방 언어법은 의사소통, 양육, 교육, 창작활동, 그리고 매스컴에서 개별 민족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러시아 연방 민족들의 모든 언어의 평등성을 보장한다. 언어법 2조 1항과 2항 그리고 3항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정부는 민족구성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민족어의 전적인 발전과 보존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사용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또한 모든 국민은 의사소통 언어의 자유로운 선택, 양육, 교육 그리고 창작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민족어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한다.

둘째, 언어의 경제적인 보호를 위해서 민족 언어 보존과 발전을 위한 정부 및 학문 프로그램에 특별한 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 목적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4조3항). 민족언어의 보존과 교육 그리고 발전을 위한 연방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해당 연도 연방재정법에 따라 마련한다(7조2항).

셋째, 러시아연방 국민은 양육과 교육을 위해 자유롭게 언어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9조1항). 러시아연방 국민은 교육체제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족어를 통해 기초적인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민족어를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필수적인 숫자의 교육시설, 학급, 단체 등을 구성하고 이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한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실현된다(9조2항).

넷째, 매스컴에서의 민족어 사용을 보장한다. 언어법 20조 1항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서 발행되는 잡지와 신문, 공중과 방송은 국어인 러시아어로 제작된다. 한편 동향에서는 러시아 전역에서 발행되는 잡지와 신문은 또한 발행자의 판단에 의하여 다른 언어로 제작될 수 있다. 또한 20조 2항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지방정부의 매스컴은 러시아어, 공화국 국어, 또한 자신들의 영토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의 언어들로 제작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연방 언어법은 의사소통, 양육, 교육, 창작활동, 그리고 매스컴에서 개별 민족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족어의 교육과 발전을 위

해 러시아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담지는 않고 있다. 연방정부가 민족 언어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은 연방정부가 특별 프로그램을 채택할 경우와 공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민족의 수가 140여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별프로그램의 혜택을 모든 민족이 다 누리기 어렵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 거주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관련 특별 프로그램이 채택된 바는 아직까지 없다. 각 대학별로 필요에 따라 한국어과나 한국학과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초교육 단계에서 러시아정부가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한 사례는 1996년 이후로는 연해주에서 한 번 존재한다. 게다가 한국어 신문이나 방송은 러시아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발행인의 능력에 맡겨져 있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민족이 어느 정도의 밀도로 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재정지원이나 언어학습교재 개발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어법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실상 해당 민족 집단의 능력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4) 문화에 관한 법률적 기초에 관한 법

“문화에 관한 법률적 기초에 관한 법(Закон основы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культуре - 이하 문화기초법)”은 1992년 10월 9일 채택되어 2010년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다. 서문에 따르면 “문화가 개인의 자기실현과 발전, 인본주의적 사회 발전, 민족들의 민족적 창의성의 보존 및 민족들의 성취를 공고히 하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즉, 문화기초법은 러시아연방에 거주하는 민족들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명시된 민족들의 문화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의 평등성이다. 문화기초법 제6조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은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사회가 문화 영역에서 동등한 문화적 성취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민족 문화 보존과 발전을 위해 동등한 조건을 제공하고, 러시아연방 문화 정책 및 연방 정부의 문화보존 프로그램의 법률적 조정을 통하여 러시아 문화의 일체성을 제공하고 강화한다.”

둘째, 문화 영역에서의 민족들의 권리와 자유의 인정이다. 문화기초법 20조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의 민족들 및 여타 민족 집단들은 민족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거주 환경의 보호, 부활 및 보존의 권리를 지닌다.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러시아 연방정부는 민족들의 문화와 예술, 문학, 여타의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 보호주의(후원)를

실현한다(34조).

셋째, 문화기초법은 문화·민족 자치권을 인정한다. 동법 21조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은 민족단위 정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 집단들에게 문화·민족자치권을 보장한다.²⁾

문화기초법의 민족관련 규정들은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는 문화도 일종의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문화권’은 주류로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물질, 정서적 자원을 공급하는 일인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적 차이’를 옹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문화권은 주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의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소수자로서 자신의 언어, 생활양식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며, 원치 않은 강압적 문화 통합에 대항하여 줄 문화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³⁾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연방은 모든 민족 문화의 평등성을 인정함으로써 소수 민족 집단들의 주류 문화로의 동화가 아니라 소수 민족들에게 문화 및 언어에 대한 전면적인 접근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정을 통하여 러시아 전체의 문화가 형성됨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 언어와 관련된 권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 문화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미흡하다.

5) 민족문화자치단체법

1996년 6월 15일 엘친 대통령은 대통령령의 형태로 “러시아연방정부 민족정책개념(Концеп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발표하였다.⁴⁾ 이 개념은 러시아 국가체제와 관련된 새로운 역사적 조건 속에서 러시아의 단일성과 일체성을 필히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전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와 모든 거주 민족들의 이해관계의 조화, 제반 측면에 있어서의 상호협조 및 민족문화와 언어의 발전이 필수적임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민족정책개념 5장은 러시아 거주 민족들의 민족문화적 자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1996년 7월 17일 “민족문화자치단체에 관한 러시아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이하 민족문화자치단체법)”이 채택되었다.

민족문화자치단체법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민족문화자치단체법은 러시아연방의 민족

문화자치단체의 법률적인 기반을 명확히 하며, 민족문화 발전의 방향과 형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민족적인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간 상호작용의 법적인 조건들을 구성한다.” 서문에서 특이한 점은 민족문화와 관련된 제반 활동들이 국가와 민족 단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민족문화발전을 위해 러시아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와 민족 단체들의 과제의 제시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살펴보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민족문화자치단체들의 역할이 주도적이며,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도적인 기반의 제공과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정도의 역할로 축소되어 있다.

민족문화자치단체는 법률상 하나의 사회단체로 취급된다. 민족문화자치단체법 1조에 따라 민족문화자치단체는 사회조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6조에 따라 민족문화자치단체의 등록과 재편 그리고 (혹은) 해산은 “사회단체법”과 여타의 연방법에 따르게 되어 있다. 사적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성격 역시 띠고 있는데, 이는 민족문화자치단체가 러시아 국민을 구성하는 민족들의 대표기구로서 역할하며, 정부에 민족문화 관련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민족문화자치단체는 세 수준의 조직 구조를 갖는다. 첫째는 도시, 구, 읍, 면, 동 등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이며, 둘째는 공화국, 오블라스뜨, 크라이, 오크루그 등의 지방정부 수준이고, 셋째는 연방 수준이다. 러시아연방의 7개 연방구 수준에서 민족문화자치단체가 구성되지는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민족문화자치단체는 개인들의 연합으로 구성될 수 없으며, 관련 민족집단들의 결합체로서 결성될 수 있다. 지방정부 수준의 민족문화자치단체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첫째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민족문화자치단체들이 창립총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둘째는 만일 해당 지방정부에 단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민족문화자치단체가 존재할 경우, 이 민족문화자치단체는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연방 수준의 민족문화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단체가 모여서 연방수준의 민족문화자치단체를 구성하거나,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단체가 하나일 경우 이 단체가 연방수준의 민족문화자치단체가 된다.

이러한 조직 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각 수준의 민족문화자치단체는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 수준 해당 민족의 각종 단체들로 구성되므로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수준에서 대표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급 민족문화자치단체는 대표기구로서 해당 수준의 행정부와 교섭권을 갖게 되며, 민족문화 보존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민족문화자치단체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자치단체는 정부 기구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각종 권리를 행사한다. 즉, 자치단체들은 구체적인 민족문화

2) 21조는 1996년 “민족문화자치단체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추가된 조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Castle Stephan and Alastair Davidson, Citizenship and Migration: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New York: Routledge, 2000). 김현미,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제26호, 61-62쪽에서 재인용.

4) “러시아연방정부 민족정책개념”의 한글 번역본은 다음을 참조바람. “러시아연방정부 민족정책 개념,” 김인성 역, 『민족연구』 제8호, 140-145쪽.

발전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 기구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한을 가지며, 정부 기구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민족 언어나 역사, 문화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국립, 혹은 지방의 교육 기관에 학급을 개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두 번째 역할은 민족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나 습득과 관련되어 있다. 민족 문화자치단체는 러시아연방법의 절차에 따라 언론매체를 발행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 언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발간하며,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세 번째는 해당 민족의 문화, 언어, 관습 등의 발전과 관련된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산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가치 있는 민족 문화 유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민족 예술을 부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연방법에 의거하여 교육 기관 혹은 연구 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민족 언어를 통해 양육할 수 있도록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민족 언어를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각급 수준의 사립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민족 언어나 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교재, 참고서 및 여타의 서적을 출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자치단체법안은 제 민족의 자결권이 정치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던 소비에트 민족노선에서 한 발짝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변혁기 러시아의 정세 속에서 타협적인 산물로 등장한 것으로 정치외적 영역, 즉 소수민족들의 경제발전이나 교육, 문화, 전통의 보호에서의 자치는 충분히 보장되고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한 요구 즉, 러시아 국가의 전체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수준의 정치적 자치 요구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다.⁵⁾

이론상 민족문화자치단체는 문화 영역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완벽한 자치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전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족문화자치단체가 높은 수준의 재정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지원의 의무를 가지는 영역은 말 그대로 제도적인 세팅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생러시아연방이 독립한 이후 여전히 민족 관계의 정립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민족문화 관련 자치권의 보장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연해주 한인들 사례로 본 다문화 정책

1)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재이주와 정착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

5) 심현용, "극동연해주에서의 러시아한인 민족자치주: 역사적 사실 및 전망," 『한국시베리아학보』 창간호, 95쪽.

다. <표1>에 따르면 러시아연방 거주 한인들의 수는 1989년 107,100명에서 2002년에는 148,000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89년 107,100명보다 40,900명이 증가한 수이다. 구소련지역 거주 한인들의 자연증가율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상정한다면,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연방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수는 약 4만 명이라 추산할 수 있다.⁶⁾ 한편, 한국 측의 다양한 민간단체에서 추정하는 바로는 3만~4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무국적 상태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⁷⁾ 이 숫자에 공식적인 러시아연방 통계상의 한인 재이주자들 4만 여명을 더한다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러시아로 재이주한 한인들의 규모는 대략 7만~8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표1> 러시아 연방 거주 한인들의 인구변화 ⁸⁾

연도	1989	1993	1999	*2002	인구변화율 (1989~2002)
한인 인구	107,051	112,000~115,000	125,000	148,556	38.8 %

<표2>는 연해주 지방정부의 통계자료로서 한인의 연해주 유입 추이를 보여준다. 연해주의 한인들의 유입은 1993년~1995년 경에 최고조를 이루었다가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구소련 지역 신생국가들의 정치, 경제적인 혼란이 매우 심했던 90년대 중반에 한인들의 재이주가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이주민의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 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상당수의 재이주 한인들이 공식적인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체류자나 무국적자의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표2> 연해주로 재이주한 한인들 인구추이 ⁹⁾

연도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인구수	1,049	1,018	1,464	1,275	1,471	898	606	1,147

2002년의 러시아연방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른다면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은 총 17,899명으로 1989년의 8,454명에 비해 111.7%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러시아 전체의 한인 인구변화율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표1>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 연

6) 남해경 외, 『한인 인구이동과 경제환경』 (서울:집문당, 2005), 28쪽.

7) <이법관, 2009. 7. 1. 『무국적 한인 국적취득사업을 위한 현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구소련 거주 한인 50만 명 중 무국적자는 약 5만 명이며, 이들 중 러시아 거주 무국적 한인은 3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허영호, 2006. "러시아의 시민법 개정과 한인 동포의 재정착 지원방안." 『국회보』>에 따르면 러시아 거주 무국적 한인의 수는 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8)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126쪽. * 2002년 통계는 러시아통계청 인구센서스 결과임.

9) Приморский краевой комит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cited in A. C. Вапук,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Приморье ... С. 46. 심현용, 1999. "동북아 '접경지대' 극동연해주와 한민족 디아스포라." 『한국시베리아연구』, 대전: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135쪽에서 재인용.

방 거주 한인인 1989년 총 107,151명이었으며, 2002년에는 148,556명으로 이 기간 동안 한인들의 인구변화율은 38.8%였다. 연해주 한인의 인구증가율이 러시아 전체 한인의 인구증가율보다 약 3배 더 높다. 이 통계수치로부터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로부터 러시아로 이주해 온 4만 명의 한인들 중 23%에 달하는 9,445명이 연해주에 정착하였다는 사실이다.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재이주 한인들 중 1/4이 연해주를 정착지로 선택하는 셈이다. 러시아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인들의 수가 3~4만임을 고려한다면 연해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한인들의 숫자는 대략 7천~1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93년 4월에 채택된 “러시아 한인들의 복권에 관한 법”에 원거주지로의 재이주와 국적 취득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은 수의 한인이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것은 1993년의 복권에 관한 법을 실행에 옮길 세부적인 조례의 채택이나 법안의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적취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러시아연방 시민법에는 강제이주된 한인들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법 외에 국제조약에 따라 국적취득이 가능하지만 한인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연해주 재이주 한인들에 대한 각종 생계 대책 지원은 1997년 연해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바 있지만, 매우 미흡하였고 그나마 중단되었다.¹⁰⁾

2) 한국어 보존 및 교육 실태

한국 문화 관련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한국어 교육이다.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교육원,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한글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연해주 정부에 의해 초중고등 과정 일반학교인 제3학교를 한국인 민족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한글 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공적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한국교육원(이하-교육원)이다. 교육원은 대학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교회의 부설학교에까

지 가능한 한 모든 한글수업을 후원하고 있다. 교육원은 극동대학의 한국학대학에 1995년 설립되어 강의실 6개, 도서관 1개 등을 갖추고 있다. 2008년 현재 교직원인 18명이고 그 중 1명은 한국과견자이다.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한국어 강좌, 토요 한국어 강좌 그리고 특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10) 김인성, “러시아연방 이민 및 정착 지원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연해주로의 한인 재이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0권 제1호, 266-267쪽.

11) 이광규, 『우리에게 연해주란 무엇인가』(서울: 북코리아, 2008), 210쪽.

〈표3〉 블라디보스톡 한국 교육원 개황¹²⁾

연도	학생수	교사수	강좌수	주당 시간수
1997	130	8	2	46
1998	130	9	2	58
1999	275	12	2	60
2000	275	12	2	60
2001	294	13	14	56

한국교육원의 학생수는 1997년 130명에서 2001년에는 294명으로 4년 동안 2.3배 증가하였다. 교사수는 1997년 8명에서 2001년 13명으로, 2008년에는 18명으로 증가하였다. 교재로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출간하는 한국어 1, 2, 3과 민요집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태권도, 사물놀이 등의 과목을 특별반에서 교육하고 있다.¹³⁾

연해주의 대학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곳은 모두 9곳이 있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블라디보스톡의 한국학 대학이다. 이 대학은 1995년 고향이 블라디보스톡 소재 러시아국립극동대학에 한국학대학 건물을 기증함으로써 탄생했다. 1993년 기존의 조선어과를 한국학대학으로 확대개편하고 싶다는 극동대학 총장의 제의에 따라 고려학술문화재단이 200만불의 특별기금을 출연해 건물을 극동대학에 기증함으로써 1995년 10월 2일 이 대학이 탄생했다. 과거 한국학 대학은 극동대학교 동양학대학에 속해 있었고, 여기에는 과거 일본어과, 중국어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한국어과 등이 있었는데, 한국어과가 하나의 독립된 건물을 가짐으로써 대학으로 승격되었다.¹⁴⁾ 한국학 대학에는 1학년부부터 5학년 까지 총 250명의 학생들이 한국학을 배우고 있다. 이 학생들 중 고려인은 30명 가량 된다.¹⁵⁾

〈표4〉 연해주 대학의 한국 관련 학과 현황¹⁶⁾

대 학	교 수	학 생	설립년도
극동대학교 한국학대학	8	222	1980
우스리스크 사범대학 한국어과	7	80	1992
블라디보스톡 경제대학 한국어과	5	30	1992
극동기술대학 한국어과	4	24	1997
극동해양대학 한국어과	1	20	2001
우수리 농과대학 한국어과	2	25	2001
아르툼 극동대학 분교	2	25	1997
아르툼 기술대학 분교	2	25	1997
나훗트카 경제대 분교	2	50	2000

대학에 뒤따라 초중등교육과정이 포함되는 일반학교에도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

12) 최영표, 같은 책, 143쪽.

13) 최영표, 같은 책, 143쪽.

14) 이승호 외, 『연해주와 고려인』(서울: 백산서당, 2004), 77-78쪽.

15) 전세표·강승아, 『극동러시아 리포트』(부산: 산지니, 2009), 223쪽.

16) 이광규, 『우리에게 연해주란 무엇인가』(서울: 북코리아, 2008), 205쪽.

어를 수업하는 학교가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2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 일반학교에 부설된 한글반은 한글만을 가르치는 한글학교로 이 곳에서는 월수금 각 2시간 혹은 화목 2시간씩 수업하는 학교가 있다. 2001년도 통계에 따르면 학생수가 7명에서 40명인 반까지 있으며 평균하여 한 반에 20명 정도였다. 블라디보스톡에는 남서울 교울 교회가 2005년 건립한 국제학교가 있다. 기숙사시설이 완비된 이 곳에서는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를 동시에 수업하는 명실 공히 국제학교이다. 블라디보스톡 국제학교는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 경제적 기반이 확고하다. 그러나 극동대학을 위시하여 러시아 대학교와 일반학교는 재정적 기반이 열악하다.¹⁷⁾

〈표5〉 연해주 중고등학교 한국어 강좌 현황¹⁸⁾

학교명	교 사	학 생	설립년도
블라디보스톡 제1학교	1	46	1995
블라디보스톡 제2학교	2	58	1998
블라디보스톡 제9학교	1	8	1994
블라디보스톡 제22학교	1	25	2000
블라디보스톡 제47학교	1	15	1997
블라디보스톡 제76학교	1	10	2000
블라디보스톡 제80학교	1	15	2000
블라디보스톡 제28학교	2	30	2003
블라디보스톡 동양어학교	1	40	2000
유럽아시아학교	1	5	1999
국립경제대학 부설학교	1	40	
국립기술대학 부설학교	1	5	
우수리스크 제3학교	2	340	2000
우수리스크 제29학교	2	100	2000
우수리스크 제133학교	2	214	2000
아르툼 제6학교	1	20	
아르툼 제11학교	1	20	2000
나홋카 제1외국어학교	1	50	2000
나홋카 제2외국어학교	1	26	2000
스파스크 제1학교	1	20	2000

한글학교는 주로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한국어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은 공식적인 기관에 비해서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¹⁹⁾

공립학교 이외에 한글을 배우는 한국학교는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교육

원과 사립학교의 한글반이고, 하나는 단체의 부설학교이며, 하나는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이다. 연해주에서 개설된 한글학교를 나누어보면 사립학교로 세워진 곳이 4개교, 고려인 문화센터가 운영하는 학교가 2개교 그리고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가 13개 교이다. 교회에 부설된 한글학교는 다른 토요일학교와 달리 한국에서 파견된 신자 중에서 한 사람이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교회의 예배가 끝난 뒤 교회의 한 방을 이용하여 수업을 한다.²⁰⁾

〈표6〉 연해주 한글학교 현황²¹⁾

	교사수	학생수	설립년도
사립학교 부설			
교육원 부설 한글학교	7	228	1995
교육원 부설 토요일학교	7	35	1995
블라디보스톡 동양어학교	1	3	
아르센네브로드니학교	1	43	
단체부설학교			
우수리스크 고려인문화센터	3	35	1995
파르티산스크 고려인문화센터	2	40	1995
교회부설 한글학교			
아르툼교회 한글학교	2	40	2000
동부교회 한글학교	3	20	1996
영락교회 한글학교	2	30	2000
제일교회 한글학교	1	10	1997
나홋트카교회 한글학교	2	40	1995
스라즈프카교회 한글학교	2	20	1995
파르티산스크교회 한글학교	1	20	1996
소망교회 한글학교	1	35	1994
평화교회 한글학교	1	25	2000
조선족교회 한글학교	1	30	2000
미하일교회 한글학교	1	24	2000
우정마을 한글학교	2	34	2001
한국교민 토요일학교	7	34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연해주의 한인민족학교이다. 이 학교는 우수리스크에 있다. 2004년 연해주정부는 한인이주 140주년을 기해 연해주 제3학교를 한인민족학교로 지정하였다. 이는 모스크바의 제1086학교 다음으로 두 번째 러시아 내의 한인민족을 위한 특화학교이다. 연해주 제3학교는 학생이 750명이며 10개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한인은 전체 학생의 28%이다. 이 학교는 한국민족 특화학교로 지정되어 1~4학년은 한국어를 선택으로 배우고, 5~8학년은 기초 한국어를 의무적으로 배우며, 10~11학년에서는 1주일에 2시

17) 이광규, 같은 책, 206~207쪽.

18) 이광규, 같은 책, 206쪽.

19) 최영표,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 민족교육의 실태와 지원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31집, 145쪽.

20) 이광규, 같은 책, 208~209쪽.

21) 이광규, 같은 책, 208쪽.

간씩 한국어를 의무로 배우고 있다.²²⁾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은 공교육과정과 민간단체에 의한 교육과정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교육이든 민간단체에 의한 교육이든 간에 재정적으로 건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은 모두 한국의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혹은 민간단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곳들이다. 한국교육원, 극동대학 한국학대학, 고려인문화센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목할 점은 연해주의 공교육 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한 곳을 한인 민족학교로 지정하여 한글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1996년의 '민족문화자치단체법' '교육법' 등에 명시된 민족문화자치단체의 권한을 실현시켰다는 점에 주목된다.

3) 한국 문화의 계승 및 보존

우수리스크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위한 문화사업의 중심지는 교육문화센터이다. 이것은 새마을 중앙협의회와 동북아평화연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우수리스크 재생기금 건물 내에 사무실을 두고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였다가 2004년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 고려인 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새 건물로 장소를 옮겼다. 이 건물은 고려인 연해주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다목적 회관으로 연해주 지역에 유일한 문화센터이다. 이곳에는 연해주의 이주 역사를 전시한 이주역사관이 있고, 한국전통문화 체험관이라 하여 온돌방에 한국적인 장식을 갖추고 이 곳에서 예의범절, 한국차문화 등을 체험하게 한다. 이 센터에서는 한국과 한국어 강좌,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절강좌, 한국역사강좌, 한국지리와 관광지 강좌 등이 있다. 문화센터 내에 있는 한인이주사 박물관은 특히 보훈처의 후원으로 자료를 모으고 있다. 그 자료는 연해주의 초기 정착에 관한 자료와, 독립운동가의 유물 그리고 1939년 강제이주를 당한 시기의 자료 등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다.²³⁾

한편 2009년 9월31일에는 연해주 고려인문화센터가 약 4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되었다. 러시아 정부가 2003년 12월 ‘러시아연방 고려인 이주 140주년 위원회’를 만들고 당시 이부영 전의원이 기념관 건립 추진위를 맡아 양국이 기념관 건립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어 한국 정부가 2005년 12월 국회를 통해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2007년 5월에 공사가 시작되었다.²⁴⁾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동북아평화연대 후원자들의 모금참여와 현지 한인 동포 기업인의 기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 정부는 추가로 10억 원을 지원하여 총 35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이 문화센터에는 한인들의 연해주 이주와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

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주 역사관(국가보훈처 후원) 한국어와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경기도, KT후원), 치과 내과 외과 한방 등을 갖춘 외래병원(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후원), 한국문화체험관(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다목적 공연장, 한국방문객용 간이숙소, 고려인단체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²⁵⁾

고려인문화센터의 준공은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의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정부가 연해주 지역의 한인 문제와 연해주 개발을 둘러싸고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2003년 러시아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지만, 문화센터의 건립은 거의 전적으로 한국정부 및 기업, 연해주 한인 등이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먼 미래에는 러시아 정부와 연해주 정부의 지원의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러시아 정부의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편의 제공과 한국 측의 재정지원이라는 패턴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4) 민족문화자치단체의 결성 및 활동

1996년 러시아연방정부가 “민족문화자치단체에 관한 법”을 채택한 이후 한인사회는 각 지역에서 민족문화자치단체를 결성하여 왔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러시아연방에는 자치단체수준에서는 21개, 지방 수준에서는 5개, 연방 수준에서는 1개의 민족문화자치단체가 결성되었다. 연방수준 한인민족문화자치단체는 다양한 한인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1996년 10월 19일에 결성되었으며, 임원진을 선출하고 규정을 마련하였다.²⁶⁾ 연해주 한인 민족문화자치단체는 1999년 2월 연해주 각 지역의 한인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결성했으며, 형식상 한인사회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다.²⁷⁾ 연해주 한인 민족문화자치단체는 2004년 3월에 기관지 “고려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²⁸⁾

연해주 한인민족문화자치단체는 이 지역 한인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해주 한인단체들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 나호트카, 아르츰, 빨치산스크, 아르세니예프 등 6개 지역에는 각 지역 고려인 협회가 구성돼 있다. 한편, 연해주 고려인 재생기금은 우수리스크에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로 재이주하는 한인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연해주 지역 한인협회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결성했다. 재이주 한인을 위한 정착촌 사업이 이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해주 정부도 이 단체

25) 이부영 (사)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의 측사
(<http://yanbianforum.com/board.html?include=&mode=view&id=84778&lc=1000000&sc=&mc=&gid=nb&>)

26) Пак Борис Дмитриевич, Бугай Николай Федорович,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Москва, 2004), p. 348.

27) 이송호 외, 『연해주와 고려인』 (서울: 백산서당, 2004), 79-80쪽.

28)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Вкрае появилась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http://www.regions.ru/news/1427692/-print/>)

22) 이광규, 같은 책, 208쪽.

23) 이광규, 같은 책, 180-182쪽.

24) “러 우수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 곧 개원,” 『연합뉴스』 (2009. 9.7.)

를 협력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연해주 한인경제인협회는 1994년 4월에 결성된 한인 기업가 단체다. 기존의 고려인협회가 재정이 빈약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기업인이 나서서 조직했다. 이주 정착민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거비용을 대부하거나 시장에서 상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²⁹⁾ 러시아연방법상 연해주 한인민족문화자치단체는 연해주의 다양한 한인단체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연해주의 각종 한인단체들은 한인민족문화자치단체를 통하여 연방정부나 연해주 지방정부와 민족문화와 언어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한인들의 이민이나 정착 문제 등과 같은 제반 이슈들을 논의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러시아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민족문제의 해결과 국가적 일체성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연해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스리스크의 한인 민족문화자치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연해주 정부의 사회발전 및 언론정보부 타티야나 이바노브나는 연해주에 등록된 소수민족 단체들은 8개이며 그 중에서 제일 활발하고 뛰어난 단체는 우스리스크 한인 민족문화자치단체라고 말한 바 있다.³⁰⁾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의 한인 단체들 역시 활동이 활발한데 이 지역에서는 1990년 고려인협회가 생긴 바 있다. 이 협회는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민족문화 자치단체로 통합되어 활동하고 있다.³¹⁾ 민족문화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요한 활동은 학교를 후원하는 것과 행사를 치르는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한인 자녀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9번 학교와 22번 학교이다. 9번 학교에는 한국어반과 중국어반이 있어 자치단체가 한국어반을 후원하고 있고, 22번 학교에는 한국어반만 있으며 이곳의 선생 2명의 월급을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행사는 8월 15일 문화절 행사와 음력 설날 잔치가 있다. 8월 15일 문화절 행사는 야외에 나가 놓고 운동회를 하는 것으로 보통 2백명이 참가한다. 설날에는 장소를 빌려 신년하례식을 행하고 여흥으로 노래자랑을 한다. 설날 잔치에는 각자가 경비를 담당한다.³²⁾

4. 결론

러시아연방의 다문화정책은 태생적으로 민족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여기에는 소비에트 정권의 탄생으로부터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민

족들을 포섭하고 이 민족들을 소비에트 체제에 동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었던 과거의 역사적 경험의 유산도 있지만, 분리주의적 민족주의의 분출과 함께 구소련이 해체되었던 경험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소련의 민족정책은 실패로 끝났고 민족주의의 위협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러시아연방정부는 구소련의 정책과는 차별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러시아국민으로 융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민족문제의 해결과 국가적 일체성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연해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정부와 연해주정부의 다문화정책 역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연해주 한인 사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 다문화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과제로서 민족관계 정립의 최우선성이다. 신생러시아연방이 최초로 채택한 헌법이 “우리, 다민족 국민”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민족 간 갈등의 해결과 평화와 동의에 기반을 둔 민족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국가적 일체성을 확보한다는 것을 러시아연방의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연방정부는 이미 독립 직후 과거 구소련 시기에 수행되었던 민족 집단들에 대한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기위한 일련의 노력을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 탄압받았던 민족들의 복권이었으며,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던 연해주 한인들의 명예회복과 이들의 재이주와 정착을 위한 조치가 마련될 수 있었다.

둘째, 정치성의 배제이다. 구소련의 몰락 과정에서 소비에트 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던 민족들과 이에 더해 러시아소비에트연방 내의 상대적으로 대규모 민족들이 독립과 주권을 요구하고 정치적으로 독립하거나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은 체첸 공화국의 독립요구나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집착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진행 과정에 있다. 이로 인해 신생러시아연방의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민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정치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민족이 정치적으로 분리 독립이나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를 차단하고자 한다. 연해주 한인 집단과 관련하여 자치지역을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나, 러시아연방정부의 민족정책을 고려한다면, 한인자치지역의 출현은 상당기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다문화정책의 문화중심성이다. 민족문제가 정치화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언어, 예술, 교육, 역사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각 민족들에게 최대한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인 자치권의 요구가 야기할 수 있는 국가일

29) 이송호 외, 같은 책, 79-80쪽.

30) 임영상 외,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212쪽.

31) 이광규, 같은 책, 150쪽.

32) 이광규, 같은 책, 150쪽.

체성의 약화나 혹은 특정 민족에의 특권 부여로 인한 민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별 민족의 민족문화에 관한 한 거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족적인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해주 한인들의 경우 우수 리스크와 불고그라드에 자치단체 수준의 한인민족문화자치단체를, 또한 연해주에는 지방 정부 수준의 한인민족자치단체를 결성하여 언어, 문화, 역사, 기타 다양한 영역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정부와 연해주정부의 협조를 통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민족 간 평등의 원칙이다. 러시아연방은 다양한 민족구성과 행정구역 편제상의 민족 간 불평등, 그리고 민족성원수에 있어서의 심각한 불균형 등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민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민족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각 개별 민족이 처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여 개별 민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나 특정 민족에 대한 특혜의 부여로 여겨지는 정책의 수립과 수행은 다른 민족들을 자극하여 민족 간 불화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러시아연방정부는 민족 간 평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인구의 80%를 점하는 러시아민족과 0.1%를 점하고 있는 한인들은 언어, 문화와 관련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소수 민족을 차별함이 없이 문화적인 동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연방의 다문화정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러시아연방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제도적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첫째, 민족문제의 해결, 민족 간 관계의 정립이 매우 중요한 국가과제로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민족 간 관계의 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민족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와 러시아 국민정체성의 형성과 국가일체성의 확보라는 과제가 적절히 조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족문화에 대한 제도적 규정들이 일반적이며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 때문에 연해주 한인들의 명예회복과 러시아국적의 회복, 정착지원 등의 문제가 법률상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민족 간 평등의 원칙과 함께 러시아연방 영토 내의 모든 민족에게 문화에 관한 한 거의 전적인 자치권이 부여되었지만 권리의 실현은 사실상 개별 민족 집단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연해주 한인들에 대한 러시아정부와 연해주정부의 주목할 만한 정책은 몇 가지가 있다. 재이주한인들에 대한 정착촌의 제공, 한인민족학교의 지정, '러시아연방 고려인 이주 140주년 위원회' 구성 및 고려인 문화센터건립 협약서 체결, 연해주 한인 축제에 대한

후원 등이 그것이다. 러시아정부와 연해주정부가 한인들의 민족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인민족학교의 지정을 제외한 다른 사업들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은 한국의 정부기관, 민간단체, 기업 그리고 현지 한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정부와 연해주정부가 추진했던 정착촌 지원 사업은 실패하였으며, 이 사업은 현재 한국의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한국어 및 기타 문화관련 교육도 대부분 한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40주년 기념센터의 건설비용 역시 한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현지 한인들에 의해 조달된 바 있다.

러시아연방에는 다민족문화의 공생과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별 민족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보호는 국가의 일체성의 확보라는 목표에 의해 제한받고 있으며, 문화 영역에서의 자치권의 발현은 개별 민족 집단의 능력에 맡겨져 있다. 독립 이후 러시아연방이 안고 있는 국민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과 정치·사회·경제 영역의 전반적인 안정의 달성이 없는 보다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과제의 제시와 이의 해결은 가까운 장래에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표7〉 러시아연방 민족별 인구구성³³⁾

민족	인구	민족	인구
러시아 총인구	145166731	Kalmyks	173996
Russians	115889107	Moldavians	172330
Tatars	5554601	Laks	156545
Ukrainians	2942961	Koreans	148556
Bashkirs	1673389	Tabasarans	131785
Chuvash	1637094	Adygejs	128528
Chechens	1360253	Komi-permiaks	125235
Armenians	1130491	Uzbeks	122916
Mordivians	843350	Tadzhiks	120136
Avars	814473	Balkars	108426
Belorussians	807970	Greeks	97827
Kazakhs	653962	Karelians	93344
Udmurts	636906	Turks	92415
Azerbajdzhanians	621840	Nogajs	90666
Marijs	604298	Khakassians	75622
Germans	597212	Poles	73001
Kabardians	519958	Altays	67239
Osetians	514875	Cherkes	60517
Dargins	510156	Lithuanians	45569
Buriats	445175	Nenets	41302
Yakuty	443852	Abazas	37942


33) 민족별 인구구성은 2002년 러시아연방 인구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민족	인구	민족	인구
Kumyks	422409	Evenks	35527
Ingushs	413016	Chinese	34577
Lezgins	411535	Finns	34050
Komi	293406	Turkmens	33053
Tuvinians	243442	Bulgarians	31965
Jews	229938	Kirgizs	31808
Georgians	197934	Ezids	31273
Karachais	192182	Rutuls	29929
Gipsies	182766	Khants	28678
Latvian	28520	Turks-meshetins	3257
Aguls	28297	Shapsugs	3231
Estonians	28113	Itelmens	3180
Vietnamese	26206	Besermanians	3122
Kurds	19607	Kumandians	3114
Evens	19071	Ulchis	2913
Chukchis	15767	Czech	2904
Shors	13975	Ujgurs	2867
Assirians	13649	Sojots	2769
Gagauzs	12210	Mongolians	2656
Nanays	12160	Teleuts	2650
Mansi	11432	Talyschs	2548
Abkhazs	11366	Telengits	2399
Arabs	10630	Tats	2303
Tsakhurs	10366	Kamchadals	2293
Pushuns	9800	Saams	1991
Nagays	9600	Eskimos	1750
Koriaks	8743	Udegess	1657
Veps	8240	Karakalpaks	1609
Dolgans	7261	Tubalars	1565
Rumanians	5308	Spanish	1547
Nivkhs	5162	Khemshils	1542
Indians hindi-speaking	4980	Yukagirs	1509
Selkups	4249	Kets	1494
Serbs	4156	Americans	1275
Tatary crimean	4131	Chuvans	1087
Iranians	3821	Italians	862
Hungarian	3768	Chelkans	855
Udins	3721	Tofalars	837
Mountain Jews	3394	Japanese	835
Nganasans	834	French	819
Dungans	801	Cuban	707
Orochi	686	Chulyms	656
Slovaks	568	Negidals	567
Aleuts	540	English	529
Central Asian Gipsies	486	Karaites	366
Ulta (oroks)	346	Izhorts	327

민족	인구	민족	인구
Tazs	276	Entses	237
Central Asian Araby	181	Krymchaks	157
Rusins	97	Vods	73
Central Asian Jews	54	Georgian Jews	53
Kereks	8		
Persons of other nationalities (not mentioned above)	42980	Persons who didn't state nationality in the questionnaire	1460751

사상과 혁명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혁명이 갖고 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주요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혁명

제4부 중국혁명

교양사회

조정남 편역 / 값 10,000원